



# 생명보험 정산거래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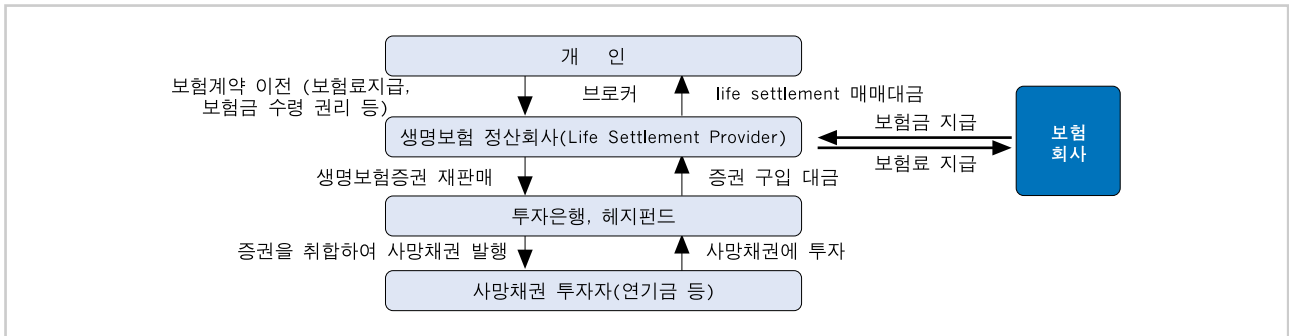
李 碩 皓 (研究委員, 3705-6391)

최근 들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음.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공·사적 연금 시스템이 미흡한 우리나라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생명보험 정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인생명보험 계약을 매매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생명보험 정산(life settlement) 거래가 급성장하고 있음.
  - 먼저 생명보험 정산회사(Life Settlement Provider)는 브로커를 통해 생명보험계약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개인으로부터 생명보험증권을 매입한 후 잔여 보험계약 기간 동안 해당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계속 납입해 주고, 그 대가로 피보험자 사망 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이후 생명보험 정산회사는 매입한 보험증권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등에 재판매하고, 투자은행 등은 이러한 보험증권을 모아 사망채권(death bond)을 발행하여, 주로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함.
  -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통칭하는 생명보험정산거래는 199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된 이후 거래규모가 연 평균 70%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6년 말 현재 약 61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년 내에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생명보험 정산 거래 흐름도

(단위 : %)



자료 : BusinessWeek, 2007. 7. 30, Nomura Research Institute, "금융 IT 포커스", 2008. 1



- 개인이 제3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증권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환급금 수령, 고령화 사회 급진전, 저금리 지속 등을 들 수 있음.
  - 가장 직접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의 해약을 원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직접 계약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생명보험 정산 회사를 통한 경우 환급금을 보다 많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기대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적잖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기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한 목돈 마련, 의료비 조달 등 경제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생명보험 계약을 매각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자신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보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의 경우, 유통시장을 활용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정리하고 보다 좋은 조건의 대체, 투자처를 모색할 유인이 높아짐.
  - 이 밖에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에 수령할 보험금의 현재가치가 하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임.
  
- 한편 투자자 측면에서 생명보험 정산거래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존의 투자대상과는 다른 새로운 고수익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임.
  - 일반적으로 사망채권의 경우 연 평균 수익률이 8~15%에 달하면서 주식,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과의 상관성은 거의 없는 반면, 장수리스크 등 거래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는 이미 정산 매매대금, 채권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음.
  - 특히 장수리스크의 경우, 정산되는 생명보험증권의 풀(pool)이 확대될수록 그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대해 Goldman Sachs 등 대형 투자은행들 및 미국증권가는, 사망채권이 대표적 차세대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공·사적 연금 시스템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생명보험 정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우선 현행 국내법상 개인이 보유한 생명보험의 소유권 또는 보험금 수령권을 보험자(보험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함.
  - 또한 생명보험 정산거래가 살인행위(homicides)를 유발하여 생명보험의 도덕적 위험 측면을 극단적으로 표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제도상의 보완장치와 함께 정산회사 및 브로커 등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생명보험증권 보유자의 생전 노후생활자금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망보험 본래의 취지인 사망 시 보장자금 제공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일부만 매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KIF**